

『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3월 4일

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
- 박물관 개관 전부터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여 박물관 전시·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유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~제6조)
- 유물의 가치평가 및 수집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~제10조)
-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~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4조, 제8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조례안은

구미시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유물의 수집대상, 구입, 기증, 기탁 등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및 유물수집 위원회의 설치, 위원의 위·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관리관 등의 사무 및 유물의 관리·대여·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등 향후 구미시에 개관예정인 박물관에 전시·보존할 유물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및 유물수집심의 위원회의 심의·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, 유물의 진위 여부와 예산 등을 고려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유물의 대여·열람·복제료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